

英國「요오맨」에 關한 一 研究 (其 2)

金 宗 炫

<目 次>	
V. 農業變化와 「요오맨」	2. 「요오맨」의 興隆過程
1. 農業變化와 「요오맨」의 地位	VI. 結 語

V. 農業變化와 「요오맨」

1. 農業變化와 「요오맨」의 地位

15, 6世紀의 商業 및 工業에서의 初期資本主義의 發達は 그 當然한 結果로서 農業에도 影響을 주어 從來의 慣習的인 農業慣行을 競爭의 場裡에 露出시켰다. 土地는 領主의 社會的 權威의 象徴임을 그치고 거기서부터 利潤을 抽出해야 할 所得의 源泉으로 看取되게 되었다. 따라서 領主는 이미 舊來의 慣習的인 支拂에 滿足하지 않고 스스로 直接 農業經營을 한단든가 또는 그것을 높은 競爭地代로 大借地農에게 一括해서 貨與하려고 한다. 이에 加해서 商業에서 莫大한 {富를 蓄積한 商人은 土地를 投機의 對象으로서 단이 아니라 그의 合理的인 經營에 依해서 利潤을 올리려고 그것을 購入해서 地主가 되고 地方의 「젠트리」(gentry)와 함께 大農業經營者 및 大牧畜業者層을 形成하는 것이다⁽¹⁾ 그들은 『그 農業經營을 새로운 商業的 諸條件에 對處하도록 採用한다면 많은 것을 收得할 수 있었으나 萬若에 낡은 方法을 固守할 程度로 保守的이라면 많은 것을 喪失했다.』⁽²⁾ 이러한 事情은 當然히 舊來와 같은 慣習的 規制에 依한 農業經營을 止揚시키게 되었고 거기서 農業革命이 結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에 對해서 羊毛需要의 增大와 農產物價格의 騰貴는 重要한 役割을 했던 것이다. 일찍부터 英國에 뿌리심은 毛織物工業은 그 後 堅實한 發達을 繼續해서 16世紀에는

(1) 이러한 過程에 關해서는 R. H. Tawney, "The Rise of Gentry, 1558-1640," *The Economic History Review*, XI, 1941 (*Essays in Economic History*, 1954, ed' by E. M. Carus-Wilson, pp. 188-9. 以下 이 論文의 引用은 이 版에 依據함) 參照.

(2) R. H.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p. 195.

絶頂에 達하고⁽³⁾ 그에 따른 羊毛需要의 急速한 增大는 牧畜業으로 하여금 農業에서 가장 有利한 部門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16世紀의 周知의 大「인클로우저」의 基本的 原因이 되고 그것은 當時 輿論의 큰 非難의 對象이 되었던 耕地의 放牧地에의 轉換을 隨伴했던⁽⁴⁾ 것이다.

한편 貨幣價値의 低下⁽⁵⁾에 依해서 物價도 크게 騰貴하고 있다. 다음의 第9表는 16世

<第9表> 物 價 趨 勢

	小麥	豆類	燕麥	大麥	牛	羊	豚	鷄	鷄卵
	s. d.	s. d.	s. d.	s. d.	s. d.	s. d.	s. d.	d.	d.
1401--1450	5 9 $\frac{1}{4}$	3 2 $\frac{3}{4}$	7 9	4 3	16 5 $\frac{1}{2}$	2 1	7 6 $\frac{3}{4}$	2	5
1451--1500	5 6 $\frac{1}{4}$	3 4 $\frac{3}{4}$	6 6 $\frac{3}{4}$	3 8	15 7 $\frac{1}{2}$	1 10 $\frac{1}{4}$	8 3 $\frac{1}{4}$	2 $\frac{1}{4}$	5 $\frac{1}{4}$
1501--1540	6 10 $\frac{1}{4}$	5 1 $\frac{3}{4}$	9 4 $\frac{3}{4}$	4 5	22 9	2 10 $\frac{1}{4}$	10 0	3	9
1541--1582	13 10 $\frac{1}{2}$...	20 10 $\frac{3}{4}$	10 5	70 0 $\frac{1}{4}$	6 4	...	4 $\frac{3}{4}$...

※ 單位 : 1 「퀴터」當 ※※ 單位 : 1 「그로스」(gross)當

R. H.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p. 198, Table VII.

紀以降 物價가 顯著하게 騰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物價騰貴가 뜻하는 것은 明白할 것이다. 領主 및 大借地農은 보다 많은 農產物을 生産하고 그 利益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土地를 가장 有利하게 經營하려는 強力한 誘因을 갖게 되고 이것은 더욱 「인클로우저」를 惹起시킨다. 事實 16世紀初期에 「피즈허버트」(Fitzherbert)는 圍籜되지 않은 土地는 1 「에이커」當 6 「펜스」로 賃借되고 있는데 對해서 圍籜된 土地는 8 「펜스」로 賃借되고 있다고 말하고 「개브리엘 플레즈」(Gabriel Plattes)는 17世紀에 1 「에이커」의

(3) 毛織物工業의 發達은 다음의 毛織物輸出統計에 依해서 알 수 있다.

年 度	1354	1509—23 (1 年平均)	1524—33 (1 年平均)	1534—39 (1 年平均)	1540—47 (1 年平均)	1554
輸 出 量	4,774 $\frac{1}{2}$	84,789	91,394	102,647	122,354	160,000 양말 25萬足

※ 單位는 「피이스」(Piece)

Tawney, *op.cit.*, p. 196에서 作成.

(4) 「인클로우저」運動이 耕地의 放牧地에의 轉換을 隨伴했는가 안했는가에 關해서서 肯定說을 取하는 「케이」와 否定說을 取하는 「리이텐」사이에 論爭이 벌어졌다. 이에 關해서는 小松芳齋 「第一次インクロウジヤに關する通說の形成過程」 『早稻田政治經濟學雜誌』 第135號 및 第139號 參照.

(5) 『貨幣價値』는 部分的으로는 鑄貨의 貶貨에 依해서 또—보다 後에는—「페루」(Peru)의 鑛山으로부터의 貴金屬의 流入에 依해서 低下했다.』 E.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1, p. 167.

圍牆地는 4「에이커」의 共同地에 相當한 價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 地主는 이미 低額의 慣習地代에 滿足해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그들의 土地로 부터 높은 競爭地代와 權利金을 榨出함으로써 物價騰貴에 對處하려고 한다. 『物價騰貴의 波濤는 慣習的 諸義務 固定的 諸負擔 및 慣習的 諸貢租의 堤防에 밀려닥치고 썩서는 또다시 닥쳐서 그것을 破壞하든가 또는 그 側面을 灣曲시켜서 새로운 水路를 開拓했던 것이다.』⁽⁷⁾ 여기서 부터 農民事情의 困難한 問題가 惹起되는 것이다.

地主가 「인클로우저」를 함에 있어서 먼저 注目한 것은 그들의 直營地였으나 그 境遇에도 直營地耕作에 從事하고 있던 農業勞動者가 逐放되고 또 收穫後의 共同放牧權이 侵害되었다고 생각된다.⁽⁸⁾ 共同地의 圍牆은 보다 더 農民의 生活을 威脅했으며 여기에 領主와 農民의 利害關係는 明白하게 對立하고 있었다.

16世紀의 英國農村에서는 耕作과 함께 牧畜도 重要な 側面을 차지하고 있고 그 重要性에 比例해서 共同地의 重要性도 컸다. 이 時期에 農民은 많은 牛馬를 飼育하고 「메너」에 따라서는 그것은 各保有地마다 平均 6~8頭였으며 羊도 150~200頭를 飼育하고 있었다.⁽⁹⁾ 이러한 家畜을 飼育하는 데에는 充分한 共同地——放牧地가 必要했다. 그러나 共同地는 家畜放牧을 위해서만 必要한 것은 아니었다. 耕地를 耕作하기 위해서는 鋤牽引用 家畜을 가져야 했었기 때문에 共同地는 耕地의 維持에 不可缺한 要素였던 것이다. 따라서 開放耕地에 保有地를 가지지 않은 者에게는 共同權도 認定되지 않고 共同權의 配分은 『保有地面積에 比例해서』 行해진 것이다. 『共同地 및 共同權은 事實 農業制度의 不可缺한 部分이며 그 廢棄는 村落社會의 全構造를 瓦壞』⁽¹⁰⁾시키므로 이러한 共同地의 「인클로우저」가 領主 및 借地農에 依해서 專斷的으로 遂行되는 境遇에 農民은 共同해서 이에 反對하고 많은 農民鬭爭을 展開했던 것이다.⁽¹¹⁾

以上에서 우리는 共同地의 「인클로우저」에 依해서 共同權을 剝奪당한 農民의 困難한 事情을 考察했으나 그러나 무엇이라고 해도 當時의 큰 輿論을 惹起시키고 政府의 立法에 依해서 禁止의 對象이 된 것은 共同耕地의 牧場에의 轉換을 結果시킨 「인클로우저」였다. 이것은 耕地의 統合 集中過程에서 農民을 土地로 부터 流離시킴으로써 그들의 地位에 큰

(6) W. H. R. Curtler, *A Short History of English Agriculture*, Oxford, 1907, p. 76.

(7) Tawney, "The Rise of Gentry, 1558—1640," p. 178.

(8) Tawney, *The Agrarian Problem in the Sixteenth Century*, pp. 232—3.

(9) *Ibid.*, p. 239.

(10) *Ibid.*, pp. 238—9.

(11) Lipson, *op. cit.*, pp. 171—3. 角山 榮著『資本主義の成立過程』128—48面 參照.

變化를 招來했던 것이며 最近의 研究에 依하면⁽¹²⁾ 그것은 『廢村』 및 『人口絶滅』을 隨伴했던 것이다.

「인클로우저」運動이 農民의 地位에 큰 影響을 주었다고 한다면 「요오맨」도 그에 依해서 큰 影響을 받았을 것이다. 「베이콘」(Bacon)은 「인클로우저」에 依해서 『耕地는 牧場으로 轉換되었다. 그래서 多數의 「요오맨」層이 居住하고 있던 年契約의 또는 數世代契約의 또는 領主의 恣意下에 있는 借地는 直營地로 되었다.』⁽¹³⁾ 라고 말하고 있다. 16世紀에서의 「요오맨」의 地位를 考察함에 있어서 「인클로우저」運動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여기에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長期間에 걸쳐서 이루어진 交換 및 購買 等に 依해서 保有地의 再編成이 行해졌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考察하는 時期에 이르러서도 그것은 아직 充分히 行해지고 있지는 않았다. 거기서 叙上한 바와 같이 領主는 散在하고 있는 土地를 統合해서 圍牆하는데에 利益이 있었으므로 農民의 保有地를 交換 및 購買에 依해서 強制的으로 取得하려고 한다. 領主의 直營地사이에 散在하는 農民保有地가 그러한 統合過程에서 어느 程度沮止의 役割을 했는가는 다음의 第10表에 依해서 看取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포크」의 「웨스트 렉섬」(West Lexham) 「매너」의 耕區地圖의 寫本이다. 이것을 보면 A·B 各耕區에서 直營地 사이에 自由保有地 및 贍本保有地가 散在해 있으며 領主는

<第10表> 「웨스트 렉섬」(West Lexham) 「매너」의 耕區表

耕 區 A.				耕 區 B.			
ac. ro. po.				ac. ro. po.			
1. 自由保有地				1. 自由保有地			
2. 直營地	2	1	31	2. 直營地	0	2	4
3. 直營地	0	1	7 $\frac{1}{2}$	3. 直營地	1	0	3
4. 自由保有地				4. 直營地	1	0	39
5. 直營地	0	2	7	5. 直營地	0	1	24
6. 直營地	1	3	0	6. 直營地	1	0	38
7. 直營地	0	1	11	7. 直營地	0	1	22
8. 直營地	0	2	10	8. 直營地	1	2	19
9. 直營地	0	2	28	9. 自由保有地			
10. 教會附屬地				10. 贍本保有地			
11. 直營地	1	2	12	11. 直營地	1	1	39
12. 直營地	3	0	0	12. 直營地	2	3	39 $\frac{1}{2}$
13. 教會附屬地				13. 直營地	2	1	25

R. H. Tawney, *op. cit.*, pp. 254-5에서 作成.

(12) M. Beveridge, *The Lost Villages of England*, London. 1954. 小松芳喬「廢村と第一次インクロウジャ」『封建制と資本制』所收 第25論文 參照.

(13) Sir William Ashley,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England*, p. 63.

이것을 自己의 直營地에 統合함으로써 有利하게 利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耕地의 經濟的價値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領主는 그것을 完全히 統合해서 直營地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散在하고 있는 農民保有地를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自己의 手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農民의 「타이틀」을 問題삼기 始作하고 地代를 引上하고 또는 贍本保有를 定期借地로 轉換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 小規模의 保有地에 比해서 大農場이 어느 程度 有利했던가는 다음과 같은 地代의 比較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1568年에 있어서의 「윌트셔」의 5個 「매너」를 보면 大借地農이 支拂한 地代는 1「에이커」當 各各 1s. 6d., 7d.3/4, 1s. 5d.3/4, 1s, 1d. 3/4, 1s. 5d. 1/2 이었는데 對해서 慣習小作農이 支拂한 그것은 1「에이커」當 各各 7d.1/2, 5d., 1s.0.d.3/4, 5d.3/4, 5d. 3/4에 不過하다. (14) 거기서 領主는 從來 慣習小作農에 貸與하고 있던 土地를 回收해서 이것을 一括해서 大借地農에게 貸與하려는 強力한 誘因을

<第 11 表> 總耕地面積에 對한 大借地面積의 比率

「매너」	(1) 總面積에 對한 確認할 수 있는 면적	(2) 直營地借地農의 借地面積	(1)에 對한 (2)의 比率
Donnyngton	1523 $\frac{1}{2}$	418	27.8
Salford	856	295	34.4
Estoverton and Phipheld	1160	484 $\frac{3}{4}$	41.0
Weedon Weston	715	301	42.0
South Newton	1365	632	46.3
Washerne	1249	701	56.6
Knyghton	452	(領主所有) 268	59.2
Bishoposton	1280	805	62.9
Gamlingay Merton	283 $\frac{1}{2}$	199 $\frac{3}{4}$	70.3
Winterborne Basset	708 $\frac{1}{2}$	532	75.1
Billingford	666	507	76.1
Gamlingay Avenells	531 $\frac{3}{4}$	420 $\frac{1}{4}$	79.0
Domerham	960 $\frac{1}{2}$	824 $\frac{1}{2}$	85.8
Ewerne	473	428	90.5
Burdonsball	190	190	100.0
Whadborough	469	469	100.0

R. H. Tawney, *op. cit.*, p. 259, Table XII.

(14) Tawney, *op. cit.*, p. 256.

가지게 되었든 것이다.

有利한 大農場形成의 過程은 牧畜業의 成長에 依해서 더욱 促進되었다.⁽¹⁵⁾ 圍牆地에서의 合理的인 農業經營에 依한 收穫의 增大는 物價上昇과 함께 大借地農으로 하여금 이러한 높은 競爭地代를 支拂해도 아직 剩餘를 그 手中에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大農場이 急速히 形成된 것이며 이제 全耕地面積에 對해서 直營地借地農의 借地面積의 比率을 보면 第 11 表와 같다. 즉 16 個 「매너」中에서 8 個 「매너」에서는 全地域의 3 分の 2 以上이 그리고 7 個 「매너」에서는 4 分の 3 以上이 한 사람의 直營地借地農의 手中에 있었던 것이다.

直營地가 最初에는 小規模로 貸與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大規模의 借地農의 形成은 當然히 小農民層의 犧牲에서 遂行되었다고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事實 大農場은 小土地로 부터 形成된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例에 依해서도 明白히 알 수 있다. 1516 年에 「웜스비」(Ormsby) 「매너」에서는 以前에는 6 人の 小作農이 保有하고 있던 219 「에이커」를 領主가 單獨으로 所有했다. 1568 年 以前에 「도머햄」(Domerham)에서는 3 人の 大借地農이 耕地를 牧場으로 轉換하는 「인클로우저」를 行하고 그것은 人口減少를 隨伴했다. 이 農場에는 4 人の 小作農의 土地가 있으며 2 個의 大農場은 다른 사람이 保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윈터버인 바세트」(Winterbourne Bassett)에서는 1436 年에 數 「칼케이트」의 土地를 數人의 小作農이 保有하고 있으며 1568 年에는 3 人の 慣習小作農이 殘存하고 있으나 이 「매너」의 4 分の 3 은 한 사람의 借地農의 手中에 있었다. 「노덤벨랜드」의 「터그홀」(Tughall)에서는 直營地가 한 사람의 借地農에게 貸與되고 23 人の 小作農이 1567 年에는 8 人으로 減少하고 있다. 이러한 例는 이 以外에도 多數 存在하고 있다.⁽¹⁶⁾

「게이」(E. F. Gay)는 1455 年—1607 年の 「인클로우저」의 研究에서 當時의 著者들이 이 「인클로우저」運動과 그에 隨伴된 人口減少를 너무나 誇張하고 있다고 警告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이 期間에 圍牆된 面積은 24 州의 總面積의 約 2.76%에 不過하고 그 結果 3~5 萬人이 追放되었다』고⁽¹⁷⁾. 또한 이 期間에 圍牆된 規模는 위의 第 12 表와 같다.

(15) *Ibid.*, p. 257. 「립슨」은 牧畜業이 成長한 原因으로서 (1) 物價上昇期에 穀物輸出이 禁止되었다는 것 (2) 勞賃上昇에 依해서 農業經營이 別로 有利하지 않은데 内外의 羊毛需要는 急速히 增大하고 그 위에 牧畜業은 必要한 經費와 勞動力이 比較的 크지 않으므로 農耕보다도 낮은 費用으로 높은 利益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이것은 地味恢復에도 有利했다고 附言하고 있다. Lipson, *op. cit.*, pp. 145—7.

(16) 「카우펜」(Cawpen) 「매너」에서는 5 個 定期借地가 한 個에 統合되어 全「매너」가 1 人の 借地農에 넘어갔으며 從前에는 「워드버러」(Whadborough)의 「타운」(town)이 있었던 곳이 1620 年에는 廣大한 牧場이 되고 있는 것이다. Tawney, *op. cit.*, pp. 260—1.

(17) E. F. Gay, "Enclosures in England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7, p. 586; Tawney, *op. cit.*, p. 262. 小松芳番 「第一次インクロウジャに關する通説の形成過程」參照.

<第 12 表>

「인클로우저」의 規模 1455—1607年

單位：「에이커」

州	年	1455—1484	1485—1517	1518—1577	1578—1607	計 1455—1607	全面積에 對한 比率
北 部		2,866	5,789 $\frac{1}{2}$	11,579	5,789 $\frac{1}{2}$	26,025	0.58(%)
西 部		1,344 $\frac{1}{2}$	6,725 $\frac{1}{2}$	13,451	6,725 $\frac{1}{2}$	28,246 $\frac{1}{2}$	1.62
「미들랜드」		32,628	{ 71,635 $\frac{1}{2}$ 7,677 $\frac{1}{2}$	177,091	{ 69,758 $\frac{1}{2}$ 28,020 $\frac{1}{2}$	383,810	6.03
東 部		6,441	15,448 $\frac{1}{2}$	30,897	15,448 $\frac{1}{2}$	68,235	1.72
南 部		557 $\frac{1}{2}$	1,695	3,390	1,695	7,357 $\frac{1}{2}$	0.35
計		43,857	{ 101,293 $\frac{1}{2}$ 7,677 $\frac{1}{2}$	236,408	{ 69,758 57,679	516,673	2.76

資料：小松芳喬著『イギリス農業革命の研究』, 105面

이에 對해서 「토오니」(R. H. Tawney)는 「게이」의 數字가 「인클로우저」의 地理的 分佈를 表示하는 것으로서는 價値가 있으나 이 運動의 社會的 影響을 考察하는 데에는 別로 有用하지는 못하다고 해서⁽¹⁸⁾ 人口減少에 關한 當時의 著者들의 論著에 보다 注意하고 있는 것 같다. 「게이」에 依한 統計的 結果로 보아 當時의 「인클로우저」 運動의 影響을 誇張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事實이지만은 叙上한 農業上의 諸變化의 事情으로 보아 많은 農民이 追放되고 그것은 「요오맨」에게도 相當한 影響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農業上의 諸變化에 直面해서 맨먼저 被害를 입게 된것은 「慣習」에 依해서 保護되지 않은 任意保有農과 定期借地農이었다. 16世紀에 任意保有農이 少數였다는 것은 이러한 農民이 16世紀初에 이미 消滅해 버리고 있다는 것을 表示한다고 생각된다. 「나이턴」(Knyghton) 「매너」에서는 1554年에 이 「매너」全體가 6人의 任意保有農의 地代 및 用役과 함께 한 사람의 借地農에게 貸與되었다. 叙上한 「도머햄」에서는 1586年에 土地의 大部分이 3人의 大借地農의 手中에 있었으나 以前에는 이 土地의 1部가 4人의 任意保有農에게 貸與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⁹⁾

(18) 이에 關해서 「토오니」는 50個 「매너」에서 한 사람씩 退去하는 것과 1個村落에서 50名이 한꺼번에 追放當하는 것과는 數字의 統計的 結果는 같으나 前者의 境遇에는 別로 問題가 없다고 해도 後者의 境遇에는 全村落을 破壞할 것이라고 指摘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農民과 우리에게 重要한 것은 圍牆된 土地의 州全域에 對한 比率이 아니라 全耕地面積에 對한 比率이다.』 Tawney, *op. cit.*, p. 264. 矢口孝次郎 「トニー教授のインクロージャー論」 『封建制と資本制』 所收 第 24 論文 參照. 또한 「애슐리」(S. W. Ashley)는 牧場이 된 直營地를 考慮하지 않아도 全耕地의 5分의 1은 影響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Ashley, *op. cit.* p. 63.

(19) Tawney, *op. cit.*, p. 283.

定期借地農도 그 賃借契約期間이 滿了될 境遇에는 任意保有農과 같이 不安定했다. 勿論 그들은 借地期間의 繼續中은 그 地位가 安全했으며 그 期間도 長期에 걸친 境遇도 있었으나 農業變化期에 있어서의 領主에 依한 逐出에 언제까지나 反對할 權利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直營地를 借地하고 있는 多數의 小作農이 逐出되고 있는 例를 우리는 「애블로드」(Ablode) 「매너」에서 볼 수가 있다. 즉 1516 年에 聖「피터스」修道院은 이 「매너」를 한 사람의 借地農에게 貸與했으며 그것은 以前부터의 定期借地農을 滿期와 함께 逐出한 結果였다. (20) 또한 1553 年에 「휘트비 스트랜드」(Whitby Strand) 「매너」의 定期借地農에 關해서 보면 「휘트비」修道院이 解散되었을 때 이 土地는 國王으로 부터 「노덤벌랜드」公의 손을 거쳐서 「서 존 요오크」(Sir John Yorke)에 讓渡되었다. 小作農들은 「존」이 借地를 奪取하고 있다는 理由로 請求裁判所에 救濟를 請求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地代引上에 뚜렷이 表示되고 있다. 즉 이 所領이 修道院의 所有下에 있었을 때에는 小作農 26 人의 地代總額은 £ 28 19s. 8d. 1/2 였으며 1 人當 平均地代額은 約 £ 1 2s. 1d. 였는데 이 請求가 있었을 때에는 權利金 以外에 地代만이 £ 64 9s. 9d. 며 1 人當 地代는 £ 2 6s. 6d. 로 倍以上이 되고 있다. (21)

任意保有農과 定期借地農은 매우 不安定한 地位에 있었고 가장 많은 被害를 입었던 것이다.

다음에 農民層에서 가장 多數를 차지하고 「요오맨」의 많은 部分이 그에 包含되고 있던 贍本保有農의 事情을 考察해야 할 것이다. 16 世紀의 贍本保有農의 狀態에 關해서는 當時의 著者들 사이에도 「피즈허버트」와 같은 悲觀論者와 「키친」(Kitchin)과 「코오크」(Coke)와 같은 樂觀論者가 存在하고 있으나 (22) 오늘날에서도 贍本保有農의 地位가 慣習의 瓦解에 依해서 畚의으로 不安定하게 되었다고 하는 「애슐리」(S. W. Ashley)說과 (23) 그 地位가 裁判所에 依해서 完全히 保護되었다고 하는 「리이담」(I. S. Leadam)說 (24)이 있어서 그 當否를 簡單히 論斷하기는 困難할 것이다 (25). 이에 對해서 「토오니」는 그의 어느쪽 主張도 받아들이기가 困難하다고 해서 贍本保有農은 「매너」의 慣習에 따라 裁判所의 贍本에 依

(20) *Ibid.*, pp. 284, 204, 210.

(21) *Ibid.*, p.284.

(22) *Ibid.*, p. 289; Campbell, *op. cit.*, p. 131.

(23) Sir William Ashley, *An Introduction to English Economic History and Theory*, Part II, London, 1925, pp. 274--82.

(24) I. S. Leadam, "The Inquisition of 1517, Inclosures and Evictions. Edited from the Lansdowne MSI I.153," *Transaction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new series, Vol. vi, 1892.

(25) A. Savin, "English Customary Tenure in the Tudor Perio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XIX, p. 54; Tawney, *op. cit.*, pp. 290—3.

한』小作農이며 이 慣習——慣習은 오랜 것이라야 하고 單純한 記錄만은 慣習이 아니다——은 그들의 權利義務를 規制하므로 같은 贖本保有農이라도 그들이 屬하고 있는 「매너」의 慣習에 依해서 그들의 地位의 安全性에 差異가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²⁶⁾. 贖本保有農의 地位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問題는 첫째 그 贖本保有農이 世襲地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數年 生涯 또는 數世代동안의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가 둘째 그들의 支拂이 固定되고 있었는가 領主의 恣意에 依해서 增加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다⁽²⁷⁾. 즉 世襲贖本保有農과 支拂이 固定된 贖本保有農에 比해서 數年 生涯 또는 數世代의 權利를 가진 土地를 保有하고 또 支拂이 不確定한 土地를 保有하는 贖本保有農은 보다 不利한 立場에서 있었던 것이며 領主는 그들에게 過度한 負擔을 課함으로써 그들을 土地로부터 逐出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第 13 表> (1) 土地 保有 條件

「매 너」	世襲贖本保有	更新權을 가진 年契約贖本保有 (實質的인 世襲贖本保有)	1 世代 및 數世代 동안의 贖本保有	更新權없는 年契約贖本保有 (實質的인 年契約定期借地)
(a) 82	25	17	40	...
(b) 60	22	2	33	3
(c) 142	47	19	73	3

(2) 權利 金 의 性 格

「매 너」	固 定 된 權 利 金	固 定 되 지 않 은 權 利 金	一 部 는 固 定 되 고 一 部 는 固 定 되 지 않 은 權 利 金
(a) 86	28	58	...
(b) 61	25	35	1
(c) 147	53	93	1

R. H. Tawney, *op. cit.*, p. 300

贖本保有農의 土地保有와 權利金의 性格을 보기 위해서 「토오니」는 「사빈」(A. Savine)의 數字에 自身の 數字를 追加해서 第 13 表를 作成했다. 그것에 依하면 世襲地를 가지고 固定된 權利金을 支拂하는 贖本保有農보다도 世襲地가 아닌 土地를 保有하고 權利金이 固定되지 않은 贖本保有農이 多數였다. 더욱 權利金은 第 14 表와 같이 時代의 推移와 함께 上昇하고 있다. 權利金은 「윌트셔」의 「이스토버턴」(Estoverton)과 「도닝턴」(Donnington) 「매너」 및 「서머셋셔」의 「사우드 브렌트」(South Brent) 「매너」에서도 急激한 上昇을 보

(26) Tawney, *op. cit.*, pp. 292-3.

(27) *Ibid.*, p. 297.

여주고 있다⁽²⁸⁾. 이들은 極端한 例이었지만은 約 2年分의 地代가 適當한 것으로 看取되었던 權利金이 그 限度를 넘어서 더욱 引上되었다는 것은 事實일 것이다.

權利金の 趨勢

<第 14 表> (1) 「노덤벌랜드」의 3 「매너」에서 支拂된 權利金

「매너」	1567年			1585年		
	£	s.	d.	£	s.	d.
Ackington.....	57	3	8	87	10	0
High Buston.....	11	14	0	18	0	0
Birling.....	43	7	6	72	0	0

(2) 「윌트셔」의 6「매너」 및 「서머세트셔」의 1「매너」에서 支拂된 權利金 (1「에이커」當)

年	1520—39年		1540—49年		1550—59年		1560—69年	
	s.	d.	s.	d.	s.	d.	s.	d.
權利金	1	3	2	11	5	6	11	0

R. H. Tawney, *op. cit.*, pp. 305—6에서 作成.

地代의 固定化는 이러한 權利金の 上昇에 依해서 相殺되었던 것이다. 領主는 贍本保有農의 保有地의 更新에 있어서 이와같이 增大한 權利金を 課하고 더욱 競争에서 決定되는 「過度한 地代」를 要求——이것이 農民에게 強制될때 榨出地代(rack rent)가 된다——했던 것이며 領主의 이러한 要求에 應하지 못한 贍本保有農은 그 保有地를 放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 「요오맨」層은 많은 被害를 입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數字에만 依해서 贍本保有農인 「요오맨」의 大部分이 衰退했다고 結論하는 것은 正當하지 않을 것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16世紀에 「요오맨」은 이미 富裕化하고 매우 堅實한 階層이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캠벨」女史는 不確定하고 增大된 權利金이 贍本保有農에게 미친 影響을 重要視하면서도 그러한 權利金の 惡影響을 贍本保有農이 그 生産物로 받은 價格上昇에 依해서 어느 程度 相殺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또한 贍本保有農의 經濟의事情을 考察할 때에는 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서가 아니라 經濟的地位의 優劣에 依해서 區別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²⁹⁾. 事實 贍本保有로서 土地를 保有하고 있는 多數의 「요오맨」이 그 土地保有條件에도 不拘하고 成功하고 있는 原因은 『自由保有地에서와 같이 贍本保有地에서도 穀物이 結實되고 羊이 肥大하고 있다』⁽³⁰⁾는 事實에 依해서 그들 自身 價格騰貴의 惠澤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關해서

(28) *Ibid.*, p. 306.

(29) Campbell, *op. cit.*, p. 132.

(30) *Ibid.*, p. 137.

「노오든」(John Norden)은 『萬若에 贍本保有農의 地代가 引上되었다고 말하고 또는 權利金의 增大에 關해서 不平을 말한다면 그들의 商品이 어느 程度 生産되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다. 그러면 昔時와 今時 사이에 物價가 크게 變動한 것과 같이 地代 및 權利金도 크게 變動하고 있음을 認識할 것이다.』⁽³¹⁾라고 指摘하고 物價와 地代 및 權利金과의 相對的 關聯性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農業上의 諸變化에 依해서 贍本保有農이 實際로 被害를 입었다는 것은 事實이나 그들은 그에 諦念해서 屈服한 것이 아니라 到處에서 그에 抵抗하고 負擔의 輕減을 試圖하고 때로는 그에 成功하고 있다⁽³²⁾. 예를 들면 「에트멘스터」(Yetmenster)「매너」에서 한 「요오맨」이 贍本保有地에 關해서 請求裁判所에서 行한 訴訟이 있다. 小作農인 「윌리스」(Willis)의 死後 그 土地는 未亡人에 넘어갔으나 그 未亡人이 死亡할 境遇에는 그 土地는 權利金을 支拂해서 相續人에게 讓渡될 것이었다. 그러나 領主는 이 相續人에게 土地의 相續權을 優先的으로 認定하기는 했으나 다른 競爭者가 提示하는 것과 同額의 權利金을 要求했다. 相續人인 「윌리스」(Willis)는 이것이 「適正한」 權利金이 아니라고 主張해서 拒絕하고 領主의 行爲에 抗議했다. 이 「매너」의 慣習에 依하면 이 問題는 「公正한」 判斷을 하기 위해서 村吏(reeve) 및 農民으로부터 選出된 者에 委讓되게 되어 있었다. 거기서 選出된 者들은 領主가 要求하는 額이 過度하다고 判定하고 그들이 「適正한」 權利金이라고 생각하는 額을 規定했으므로 「윌리스」는 그 額을 支拂해서 土地 相續의 承認을 얻었던 것이다⁽³³⁾.

이러한 事實은 領主側으로부터의 權利金引上에 對해서 贍本保有農이 抵抗하고 그에 成功하고 있는 一例를 提示해 주는 것이나 領主側으로부터의 이러한 試圖에 對해서 個人的으로 抵抗이 困難한 境遇에는 贍本保有農이 共同해서 이에 反抗하면서 自身들의 地位를 지키고 있는 例를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567年 「윈체스터」(Winchester)大會堂의 大會堂長과 僧侶團은 「크론달」 「매너」에 있는 158人의 贍本小作農과의 共同契約에서 「매너」 慣習을 再確認할 것을 強要當하고 있다. 그 內容은 固定地代 固定權利金 및 世襲贍本保有는 『代後 永久히 領主와 慣習小作農 사이에 眞實하고 確實한 舊來의 慣習 權利 義務 및 慣例로서 受容되고 考慮되고 또 看取되어야 한다.……그래서 今後 存在하고 續續하고 存續하고 그리고 이들 大會堂長과 僧侶團 當該「매너」 「헉드레드」(Hundred) 및 그 모든 部分의 後繼者 및 受託者를 永久히 規制하고 拘束하기 위한 完全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31) Norden, *The Surveyors Dialogue*, BK III, quot. by Campbell, *op. cit.*, p. 136; Tawney, *op. cit.*, p. 308, note 1.

(32) Tawney, *op. cit.*, pp. 295—6.

(33) Campbell, *op. cit.*, pp. 135—6.

었다. 또한 「엘스위크」(Elswick)의 小作農들은 保有地의 性格問題로 「매너」의 領主와 訴訟을하고 있다⁽³⁴⁾.

當時의 著者들의 論調를 보면 「윌리엄 발러」(William Barler)는 『「매너」의 領主는 自身의 安全에 對해서 贖本保有農이 얼마나 귀찮은 存在인가를 미리 注意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구우지」(Branabie Googe)는 1577 年에 土地賃貸에 關해서 領主는 小作農과의 去來에서 最良의 立場에 있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³⁵⁾.

이렇게 考察하면 慣習의 힘이 아직도 強力히 作用하고 있는 곳에서는 贖本保有農의 地位도 保護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狀態는 土地保有條件에 依해서 만이 아니라 經濟的 條件에도 크게 依存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⁶⁾. 比較的 큰 面積의 土地를 가지고 있는 贖本保有農은 生産物의 剩餘分을 市場에서 販賣해서 價格騰貴의 惠澤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高額의 權利金을 支拂하면서 自身의 地位를 改善할 수 있었을 것이다. 土地保有條件이 同一해도 小贖本保有農과 富裕한 贖本保有農과는 區別해야 할 것이며 前者가 沒落해가는데 後者は 이에 對處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요오맨」의 土地가 全部 贖本保有인 境遇에도 그들 土地는 各各 다른 時期에 取得한 것이다. 따라서 權利金이 不確定해도 그들 土地保有가 한꺼번에 滿期가 되지는 않았다⁽³⁷⁾. 이렇게 해서 自身의 生活維持에도 不足한 土地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貧困한 贖本保有農이 農業變化期의 諸困難에 直面해서 沒落할 길 밖에 없었는데 對해서 富裕한 贖本保有農은 이것을 克服할 수 있었던 것이다.

事實 16 世紀의 農業上의 諸變化에 依해서 「요오맨」의 下層部分은 沒落의 運命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土地保有條件으로 보아 完全히 保護된 自由保有農이 農業上의 諸變化에 依해서 아무런 損失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有利한 立場에 있었다고 해도 定期借地農 및 贖本保有農인 一部の 「요오맨」은 매우 不利한 立場에서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그 結果 어느 程度의 「요오맨」이 沒落했는가를 確實한 數字로 提示할 수는 없

(34) Tawney, *op. cit.*, p. 295.

(35) Campbell, *op. cit.*, p. 136.

(36) 「립슨」은 慣習小作農의 地位에 關해서 經濟的側面보다도 法律的側面을 重視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突然한 逐出과 거지의 運命에 直面한 가장 富裕한 小作農은 가끔 小面積의 土地에서 貧困한 生活을 겨우 維持하고는 「있으나 經濟的 獨立性을 維持하고 있는 가장 貧困한 自由保有農을 羨望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Lipson, *op. cit.*, p. 154. 또한 「토오니」는 『自由保有農의 財産을 增大시키고 定期借地農 및 慣習小作農의 財産을 減少시킨 決定的 要因은 王國에서는 經濟에서가 아니라 法律에서 發見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서 「립슨」과 함께 法律的側面을 重要視하고 있다. Tawney, *op. cit.*, p. 34.

(37) Campbell, *op. cit.*, p. 139.

다. 이것을契機로 해서 「요오맨」은 上層과 下層에의 急速한 分化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自身の 企業心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狀態에 있던 「요오맨」은 「위로 부터의」 農業革命에 無氣力하게 屈服하지 않고 恒常 그에 抵抗하고 또는 貧農의 犧牲에서 直接 그에 參加하면서 土地를 增大하고 보다 富裕하게 되었다. 「요오맨」이야말로 農民經濟의 先導者이며 物價騰貴와 農產物增大가 뜻하는 것을 經驗으로써 認識한 사람들이었다. 「요오맨」은 數的으로는 減少했으나 富에서는 以前보다도 훨씬 富裕化했던 것이다.

2. 「요오맨」의 興隆過程

農業上의 諸變化에 有利하게 對處하고 그것을 成功的으로 克服할 수 있었던 「요오맨」은 16世紀後半으로부터 17世紀初頭に 걸쳐서 그 先祖들이 夢想하지도 못했던 程度로 繁榮할 機會를 잡을 수가 있었다. 農業變化에 依해서 土地가 中世에서와 같이 所有者의 社會的地位를 表示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的收入의 源泉으로서 看取되고 前例없는 土地市場이 成立했다는 것은 叙上한 바이지만 이에 加해서 16世紀中葉이 되면 「돔즈데이」(Domesday) 時代 以來의 最大의 土地所有權의 移動이라고 일컬어진 修道院解散, 特히 北西部地方에서 王領地의 賣却, 「인클로우저」 그리고 森林 荒蕪地 및 沼澤地의 開墾 등에 依해서 土地市場은 急速히 擴大되었던 것이다.⁽¹⁾ 解散된 修道院의 土地는 처음에는 그 大部分이 一括해서 貴族 「젠티리」 및 國王의 侍臣에게 下賜로써 讓渡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요오맨」의 土地增大에 크게 寄與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16世紀後半이 되면 이들 土地가 分割・再分割되어서 土地市場에 나타나고 小規模의 土地購買者도 그에 參加할 수 있게 되었다.⁽²⁾

小規模의 土地의 賣買는 「요오맨」의 土地獲得에 有利한 條件을 주었다. 그것은 「캠벨」 女史가 말하는 것과 같이 『利益을 올리려는 그들의 欲望은 大資本의 出資에 依한 것이 아니고 利潤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事業을 大規模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若干의 剩餘穀物을 다음 市場이 열리는 날에 販賣하고 若干 많은 羊 및 家畜을 定期市에서 販賣해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金額에 數「실링」 또는 數「파운드」를 附加할 수 있었을 적에 土地를 購入하려고』⁽³⁾했기 때문이다.

(1) W. G. Hoskins, *Essays in Leicestershire History*, p. 155; Campbell, *op. cit.*, p. 70. 「커어틀러」는 修道院解散과 1549年의 「에드워드」 六世에 依한 附屬禮拜堂土地의 沒收를 包含해서 英國土地의 約 5分의 1이 所有權을 變更했다고 말하고 있다. Curtler, *op. cit.*, p. 81. 또한 土地市場의 成立에 關해서는 Tawney, "The Rise of Gentry, 1558-1640," pp. 189-95 參照.

(2) 小松芳喬著 『封建英國とその崩壞過程』 所收 第6論文 參照.

(3) Campbell, *op. cit.*, pp. 69-70.

「요오맨」이 많은 土地를 購入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土地去來文書에서 「新規購入」이라는 語句가 가끔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若干의 例를 보면 「워스터셔」(Worcestershire)의 「요오맨」 「펜리스」(William Penrice)의 土地는 最近까지 「보오드슬리」(Bordesley) 修道院의 所有였고 「테번셔」의 「요오맨」 「럭스톤」(Barnard Luxton)은 1566 年에 「하틀랜드」(Hartland) 修道院의 한 「매너」를 購入하기 위해서 £400 을 支拂하고 있다. 또한 「요오크셔」(Yorkshire)의 12 人의 「요오맨」은 이 時期에 宗教館의 土地로 부터 利益을 얻고 있다.⁽⁴⁾

土地를 獲得하려고 하는 「요오맨」의 貪欲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보다도 下層의 小農이라든가 또는 上層의 一部の 「젠틀맨」의 不運을 利用해서 그들을 犠牲으로해서 土地를 購買하고 있다.

土地市場이 가장 일찍부터 活潑하게 成立한 것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商業의 影響을 받은 南部 및 東部地方에서였으며 이들 地方에서는 地價도 顯著히 騰貴하고 있었다. 그 例를 우리는 「플럼프톤」(Plumpton) 「매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매너」는 「헨리」 8 世時代에 「크래류」(Crarew)家에 讓渡되었으나 1555 年에는 「젠트리」인 「마스칼스」(Mascall)家가 £400 로서 이 直營地를 購入했다. 그 後 1596 年에는 附屬地를 包含해서 約 700 「에이커」에 達하는 該所領은 한 「요오맨」에게 年地代 £150 로 貸與되었다. 이 額은 40 年前의 購入價格의 3 分の 1 以上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559 年에 同 「매너」의 約 30 「에이커」의 自由保有地는 한 「허즈번드맨」에 依해서 10 s. 의 年地代와 10 s. 의 權利金으로서 保有되고 있었으나 1570 年에 그가 死亡한 後 그 土地는 未亡人을 거쳐서 아들에게 相續되었고 그는 1599 年에 「요오맨」이 되었다. 同年에 이 土地는 £165 로 한 「젠틀맨」에 賣渡된 後 세번이나 所有者가 變更되었고 1655 年에는 £437 10 s. 로 다시 賣渡되었는데 이 價格은 100 年前의 該「매너」 700 「에이커」의 價格보다도 높은 것이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高價格을 支拂할 수 있었던 것은 富裕한 「요오맨」이었고 普通의 「요오맨」은 그와같이 高價한 土地를 購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1570 年~1640 年 사이의 「요오맨」의 土地去來文書에 依하면 그의 購買規模도 相當한 偏差가 있어 1 「루드」(rood)의 土地에 支拂된 9 d. 에서 相當히 넓은 所領에 對해서 支拂된 £2100 에 이르고 있다. 3103 件의 去來例에서 보면 「요오맨」의 土地去來規模는 第 15 表와 같다. 그에 依하면 「요오맨」의 去來件數의 約 60%가 £100 以下の 去來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요오맨」이 支拂할 수 있었던 가장 一般의 額이었다고 생각된다.

(4) *Ibid.*, p. 71.

(5) *Ibid.*, pp. 95—6.

<第 15 表>

「요오맨」의 土地去來規模

去來規模	去來數	總去來數에 對한 比率
£ 50 以下	1152	37(%)
£ 50 — £ 100	675	22
£ 100 — £ 200	573	19
£ 200 — £ 500	441	14
£ 500 以上	262	8
計	3103	100

M. Campbell, *The English Yeoman under Elizabeth and the Early Stuarts*, p. 78에서 作成.

오래동안 堅實하게 自己의 財産을 增大시킨 「요오맨」은 以上과 같은 背景에서 16世紀 後半 以後 急速히 그 富를 增大시키면서 興隆하고 때로는 「젠틀맨」으로 上昇하고 있는 것이다.⁽⁶⁾

「요오맨」이 興隆한 하나의 典型的인 例로서 우리는 「테번서」에 있는 「딘 프라이어」(Dean Prior)의 「로버트 퍼어즈」(Robert Furse)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⁷⁾ 그는 1593年에 「퍼어즈」家の 家系와 『다른 敎區에 있고 다른 人들로부터 다른 「타이틀」로 入手한』 土地를 詳細하게 그 子孫에 傳하기 위해서 『「퍼어즈」家の 手記』를 남겼던 것인데 그것에 依해서 「엘리자베드」朝 「요오맨」의 典型이라고 말해지는 「로버트 퍼어즈」의 家系와 財産 및 財産의 形成過程을 알 수 있음과 同時에 그의 思考方式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퍼어즈」家は 1204年의 廢林令以後 「테번서」全域에 影響을 미친 大植民運動에 依해서 創出된 「체리턴 피즈페인」(Cheriton Fitzpaine)의 小自由保有地 「퍼어즈」(Furse)를 保有하고 그 家名을 保有地로부터 따고 있다. 따라서 「퍼어즈」家は 13世紀의 大植民運動의 結果 나타난 自由保有農이었다고 생각된다.⁽⁸⁾ 그들이 얼마동안 「쿰」(Coombe)에 居住하고 있었던가는 明確히 알 수 없으나 「헨리」8世時代에 「퍼어즈」에 나타나고 「엘리자베드」朝의 初期까지 거기에 居住하고 있다. 그 後 그들은 「존 퍼어즈」(John Furse, 1506—72)가 「모오쉬드」(Morshead)家の 女相續人과 婚姻함으로써 獲得한 「딘 프라이어」의 「모오쉬드」에 移住했다.⁽⁹⁾

(6) 이 時期에 英國農村에서는 人口移動이 많이 行해졌다. 또한 英國에서는 한 階層과 다른 階層과의 사이에 있는 距離는 決로 進낼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A. L. Rowse, *The England of Elizabeth*, p. 223; Hoskins, *op. cit.*, pp. 131—2; Campbell, *op. cit.*, pp. 37—8.

(7) 그에 關한 詳細한 研究는 W. G. Hoskins and H. P. R. Finberg, *Devonshire Studies*, pp. 356—65; A. L. Rowse, *op. cit.*, pp. 232—4 參照.

(8) 이 時期(13世紀後半)가 되어서 自由保有農이 英國農民中에서 相當한 部分을 차지하게 되었다. E. A. Kosminsky, *Studies in the Agrarian History of England in the Thirteenth Century*, p. 203, P. Vinogradoff, *Villainage in England* pp. 183—5.

(9) Hoskins and Finberg, *op. cit.*, pp. 356—8.

15世紀의 後半에 「퍼어즈」家は 「체리턴 피즈페인」에 約 50「에이커」의 借地와 「크루위즈·모오차아드」(Cruwys-Morchard)에 40「에이커」의 借地를 가진 小借地農이었고⁽¹⁰⁾ 이 家族을 「엘리자베드」朝에 繁榮시키는 基礎를 만든 것은 「존·퍼어즈」(John Furse, 1438—1508)였다. 그는 婚姻關係에 依해서 一部の 土地를 獲得하고 餘他の 土地는 讓渡 및 購買에 依해서 入手했다. 그의 아들인 同名의 「존 퍼어즈」(John Furse, 1480—1549)는 一家의 土地를 相續받음과 同時에 婚姻과 購買에 依해서 그에 附加하고 있다. 또한 그는 法學院에 가서 辯護士의 資格을 取得했고 많은 「젠틀맨」의 書記라든가 貴族高官의 執事라는 有利한 役職을 맡음으로써 높은 收入을 얻고 財産을 增大시켰다. 小財産의 女相續人과 婚姻한 그는 처음에는 『적은 財産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 . . 그女가 死亡하기 前에는 400頭의 去勢牛와 많은 貨幣 및 其他의 家財를 가진』수가 있을 程度로 富裕해 졌던 것이다.⁽¹¹⁾

그의 아들이며 相續人인 「존 퍼어즈」는 위의 모든 土地를 相續하고 「모오쉬드」의 女相續人과 婚姻을 맺음으로서 「데번셔」南部의 「딘 프라이어」에 있는 많은 農場을 入手했다. 거기서 그는 一家를 「체리턴」의 「퍼어즈」로 부터 「모오쉬드」에 옮겨 거기서 1700年까지 居住하고 있다. 「모오쉬드」家は 元來는 隸農이었으나 「퍼어즈」家과 같은 方法으로 「모오맨」에 上昇한 家族이었다.⁽¹²⁾ 「로버트 퍼어즈」는 1572年에 土地를 相續받는 한편 婚姻에 依해서 該教區의 内外에 많은 農場을 附加하고 또 土地를 購入하고 있다. 購入한 土地의 主要한 것은 再起할 展望이 없는 無氣力한 舊家の 「필립 바세트」(Philip Basset)로 부터 購入한 「스키리턴」(Skirrydon)의 「매너」였다. 「로버트 퍼어즈」가 死亡한 1593年에는 아들은 아직 未成年이었고 그 土地는 「나이트 서어비스」에 依해서 保有되고 있었기 때문에 國王의 後見下에 놓이게 되어 1594年에 後見地에 關한 慣習的인 調査가 行해졌다. 그것에 依해서 「로버트」의 財産規模를 보면 그의 所領의 全地代는 「死後訊問(inquisition)으로」 未亡人의 生存中에는 £20 11s.이며 死後에는 £30 0s. 6d. 로 되고 있다. 즉 未亡人 遺産은 全所領의 約 3分の 1이다. 「로버트」의 所領中에서 「조운 벨로우」(Joan Bellow)와 「스티븐 퍼어즈」(Stephen Furse)에게 生涯 또는 더 長期間契約으로 讓渡한 土地에서도 £61 3s. 4d.의 年金이 들어왔으며 最後에 「스키리턴」 「매너」裁判所로 부터의 臨時收入과 利益은 年年 2s. 6d. 相當이라고 記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評價는 「死後訊問에 依한」 낮은 評價였으며 當時에는 이미 意味가 없어진 것이라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¹³⁾

(10) A.L. Rowse, *op. cit.*, p. 232.

(11) *Ibid.*, p. 233; Hoskins and Finberg, *op. cit.*, p. 358.

(12) Rowse, *op. cit.*, pp. 233—4; Hoskins and Finberg, *op. cit.*, p. 359.

(13) Hoskins and Finberg, *op. cit.*, pp. 360—1.

이러한 과정에서 「퍼어즈」家は 16世紀 後半에 『先祖가 가지고 있던 바 보다도 큰 富와 名聲』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短期間에 急速하게 達成된 것이 아니라 長期間에 걸친 堅實性과 周到한 配慮에 依한 것이었다. 『비록 우리 先祖는 單純하고 教養이 없고 적은 財産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그것을 恥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장 큰 소는 처음에는 송아지이며 가장 큰 나무는 처음에는 작은 가지이며 큰 시내는 [그 源流는 작은 샘이나 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로버트」의 記述은 小로 부터 大를 이루려는 그의 姿勢를 알려주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깊은 慈悲心을 배풀라. 貧者에게는 自己의 것에서 慈善을 배풀라. 그리고 自己가 雇傭하고 있는 使用人에게는 언제나 그 苦痛에 對應할 만큼 支拂을 하라』라는 教訓은 當時의 著者들이 「요오맨」을 크게 讚揚하고 있는 하나의 理由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⁴⁾ 그리고 「로버트」는 高利貸와 利子付借金を 警戒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말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實力以上の 것은 말지 말고 可能的 것만을 말으라』⁽¹⁵⁾라는 그의 訓戒는 언제나 不可能한 일을 하려고 해서 沒落해 가는 當時의 貴族⁽¹⁶⁾에 比해서 興隆해가는 中産階級 「요오맨」의 堅實한 姿勢를 如實히 表示하고 있다.⁽¹⁷⁾

富裕한 「요오맨」이 保有地를 增大시켜서 「젠틀맨」 및 「에스콰이어」(Esquire)에 上昇하고 있는 例는 「레스터셔」에서도 볼 수가 있다. 「코스비」(Cosby) 村落의 「요오맨」 「벤트」(William Bent)는 自由保有農의 子孫이며 自身の 土地는 別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 「토마스 벤트」(Thomas Bent)는 1543년에 近隣의 「스콰이어」(squire)로 부터 4개의 農場과 2개의 小家屋을 購入했다. 다음해에도 同一人으로부터 年年 8s.의 上級地代(chief rent)와는 달리 45「시니어 마르크」로 75「에이커」의 農場을 購入했다. 7年後에 그는 「젠트리」에 上昇하고 또 다른 「스콰이어」로부터 「코스비」 「매너」와 農場 4개 小家屋 2개 果樹園과 菜園地 各 6개 製粉場 土地 400「에이커」를 購入했다. 그는 同年에 다른 「젠틀맨」으로도 家屋 및 土地를 購入했으나 不過 8年間(1543—51)에 「코스비」의 「매너」와 660「에이커」의 土地와 많은 家屋을 購入해서 興隆했던 것이다.⁽¹⁸⁾

더욱 顯著히 興隆한 例로서 「카튼 커얼류」(Carton Curlieu)의 「요오맨」 「존 배일」(John Bale)이 있다. 그는 1549년에 土地購買를 始作해서 最初에는 元來의 耕地에 있는 農場

(14) Rowse, *op. cit.*, p. 233.

(15) *Ibid.*, p. 233.

(16) 「엘리자베트」朝 貴族의 浪費와 沒落에 關해서는 Tawney, "The Rise of Gentry, 1558—1640," pp. 179—83. 參照.

(17) 小松芳喬著 『英國資本主義の歩み—農村の近代化過程』 35—6面 參照.

(18) Hoskins, *op. cit.*, pp. 155—6.

2 個를 1557 年에는 「에스콰이어」로 부터 400「에이커」의 土地를 그리고 1562 年—1563 年에는 家屋 15 個와 數百「에이커」의 土地를 各各 購入했다. 그 大部分은 地方의 「젠트리」로부터 購入한 것이다. 14 年間에 그는 1千「에이커」以上을 購入했으나 그中 約 2 分の 1 은 1562 年~1563 年의 18 個月間에 購入한 것이고 1570 年에도 그는 아직 「요오맨」이었으나 이와같이 莫大한 財産을 相續받은 「존 베일」은 「젠틀맨」이 되고 1575 年에는 「카튼 커얼류」 「매너」와 600「에이커」의 土地를 購入했다.⁽¹⁹⁾ 즉 1570 年까지도 「요오맨」이라고 불리어지던 者가 다음 世代에는 「젠틀맨」이 되고 또 다음 世代에는 「나이트」, 그리고 1643 年에는 准男爵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百年間에 達成된 것이었다.⁽²⁰⁾

「요오맨」이 興隆하고있는 例는 이 以外에도 많은 地方에서 볼 수 있으며 特히 17 世紀 初頭에는 많은 「요오맨」이 「젠트리」에 上昇하고 있다.⁽²¹⁾ 그러나 이렇게 顯著하게 興隆해서 「젠틀맨」으로 上昇할 수 있었던 것은 富裕한 「요오맨」中에서 가장 上層에 屬하는 者였으며 모든 「요오맨」이 興隆한 것은 아니었다. 大部分의 「요오맨」은 『조금씩』 土地를 購入해서 그것을 꾸준히 自己의 保有地에 附加하고 徐徐히 地位를 改善하고 繁榮하면서도 「요오맨」에 머물었다. 이 事情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호스킨즈」가 分析한 1570 年의 遺産目録을 보면 平均的인 「허즈번드맨」이 남긴 遺産目録의 評價價値는 £46 1s. 6d. 이며 한편 12 人의 「요오맨」의 그것은 £95 에서 £100 에 達하고 前者의 約 2 倍에 相當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 있는 12 人의 「요오맨」中에서 6 人은 £100 以上の 動産을 남기고 나머지 6 人은 100 以下이며 最低는 £21 1s. 6d. 로 되어있다.⁽²²⁾ 「요오맨」 自體에도 富裕한 者와 貧困한 者와의 사이에는 큰 距離가 있었던 것이며 各自의 經濟力의 差異는 그 地位改善에 있어서도 다른 結果를 招來했다. 上層의 가장 富裕한 「요오맨」이 興隆해서 「젠틀맨」에 上昇하고 있는데 大多數의 「요오맨」은 그 經濟的地位를 漸次的으로 向上시키는 以上の 것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오맨」의 富裕化는 顯著하다.

VI. 結 語

以上에서 우리는 「요오맨」의 成立過程과 16 世紀 英國農村에서의 그들의 存在形態를 考察하고 農業上의 諸變化라는 社會經濟的인 背景에서 그의 盛衰를 追跡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所論을 總括하자.

(19) *Ibid.*, p. 156.

(20) *Ibid.*, p. 128; Rowse, *op. cit.*, p. 226.

(21) Campbell, *op. cit.*, pp. 35—40.

(22) Hoskins, *op. cit.*, p. 159.

16世紀 英國에서의 實質的인 中産階級이었던 「요오맨」은 「매너」制度的 崩壞過程에서 成立한 富裕한 農民層이었다. 즉 賦役金納化의 進行과 直營地經營의 放棄는 領主의 規制로부터의 農民의 解放을 意味하고 보다 自由로운 經濟活動의 增大에 依해서 保有地面積의 齊一의 原則은 깨뜨러지고 農民間에 經濟的斷層이 形成되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한 過程에서 徐徐히 自己의 保有地를 增大시키면서 廣汎하게 成立하게된 富裕한 農民層, 이것이 「요오맨」이었다. 換言하면 「매너」制度的 崩壞는 「요오맨」層 成立의 前提條件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成立하게된 「요오맨」은 一般的으로 말해서 적어도 16世紀에 經濟的繁榮을 遂行했다. 15世紀末에서 부터 16世紀에 걸쳐서의 經濟發展은 「요오맨」의 地位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고 『物價의 繼續的上昇 市場의 擴大 地代의 固定化傾向 그리고 土地需要의 增大는 그 모두가 「요오맨」의 數를 增加시키는 傾向에 있었고 그들의 生活形態를 形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¹⁾

贅言할 必要도 없이 16世紀의 農業上의 諸變化는 小土地保有農의 防壁인 慣習을 競爭의 場裡에 露出し켰고 그에 依해서 保護되고 있던 小土地保有農을 危機에 直面시켰던 것이었다. 따라서 自身의 保有地의 「타이틀」을 明確히 主張할 수 없고 또 自身의 主導性에 依해서 地位를 改善할수 없었던 貧困한 「요오맨」이 沒落의 運命을 免치 못했던 것은 事實이며 이點 戶谷氏が 『16世紀의 「요오맨」은 明暗의 2面이 並存하고 있었다』⁽²⁾라고 말하는 것은 全的으로 옳다. 確實히 「요오맨」은 16世紀에 數적으로 減少했다.⁽³⁾ 그러나 그 數的減少가 곧 이 時期의 「요오맨」의 沒落에만 基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6世紀後半은 「요오맨」이 顯著하게 興隆한 時期여서 그 上層部는 「젠틀맨」에 上昇하고 있고 이 面으로도 「요오맨」의 數的減少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時期의 「요오맨」이 가지는 이와같은 두가지 面中에서 그들의 經濟的繁榮이라는 面에 「액센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즉 有利한 土地保有條件에 依해서 經濟的繁榮의 條件을 잡은 「요오맨」은 그 有利한 地位를 背景으로 農民經濟의 先導者로서 나타나고 小「인클로우저」및 直營地의 借

(1) Campbell, *op. cit.*, pp. 18-19.

(2) 戶谷敏之 著 「イギリス・ヨーマンの研究」 80面.

(3) 이 時期의 「요오맨」의 正確한 數字는 알 수 없으나 「그레고리 킹」(Gregory King)에 依하면 17世紀末에 上層의 自由保有農(freeholders of the better sort)가 4萬人 下層의 自由保有農(freeholders of the lesser sort)가 16萬人 있었다. 前者는 一般的으로 말해서 年收入이 鎊 100以上の 것이며 『富裕한 「요오맨」』이라고 생각된다. 이 境遇의 自由保有農은 嚴密한 法的意味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贍本保有農도 包含하고 있으므로 當時의 「요오맨」의 數를 正確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示唆的인 數字라고 볼 수 있다. G. King,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upon the State and Condition of England (Hollander)*, p. 31. *quot. by Campbell, op. cit.*, p. 219.

地에 依해서 自己의 保有地를 增大시키면서 營利目的의 合理的 農業經營을 함으로써 繁榮을 했던 것이다.

15世紀 및 16世紀初頭가 「요오맨」의 成立期였다고 한다면 16世紀後半은 그의 繁榮期였던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助教授〕

〈Summary〉

A Study on the English Yeoman

(Part II)

*Jong-Hyun Kim**

The development of early capitalism in industry and commerce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reacted upon agriculture and had substituted customary agricultural practices by competitive relations. The lands came to be regarded as a source of income rather than as the symbol of landlord's social prestige. Hence, to increase his income, the landlord practiced farming directly or tried to lease his land to great farmers *en bloc* with the high competitive rents. While the successful merchants who have accumulated great wealth through the commercial activity become the landlords by purchasing lands and, with the country gentlemen, come to form the class of great farmers and graziers. "They stood to gain much if they adapted their farming to meet the new commercial conditions. They stood to lose much if they were so conservative as to adhere to the old methods." Such conditions necessarily forced the landlords to abandon the old traditional agricultural practices, and gave rise to the agrarian revolution.

Toward those situations, mentioned above, the increase of demand for wool and the rise in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had played a decisive part. The former, the increase of demand for wool, became a fundamental course of enclosure in the sixteenth century which accompanied the conversion of fields to pastures, and the latter, the rise in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accentuated the commercial side of farming and became a cause to gain higher competitive rents and fines instead of the fixed customary rents. "The wave of rising prices struck the dyke of customary obligations, static burdens, customary dues; re-

* The author is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ssistant professor of economic history,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bounded; struck again; and then either broke it, or carved new channels which turned its flank." The fundamental courses of the agrarian revolu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lie in those conditions and the difficult problems of peasant situation emerged from them. When the demesnes were enclosed by the landlords, agricultural labourers employed on the demesnes would be evicted, and by the enclosure of commons, the peasant life would be threatened. But the matter which became the most urgent issue in the sixteenth century was enclosure accompanied the conversion of fields to pastures, and the enclosure have, it seems, influenced much upon the situation of yeoman.

Those who came to be damaged firstly by the agrarian changes were tenants at will who was not protected by custom, and leaseholders. On the other hand, also in the present day as in the sixteenth century, there are pessimism and optimism on the condition of copyholders. But as R. H. Tawney pointed out, the condition of copyholder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ustom of manor to which they belonged,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decided their conditions were the nature of their tenure and the character of rent they paid. That is, while copyholders of inheritance and of fixed payments were on the safe condition, other copyholders who held land for years, live or lives and paid unfixed payment stood on the unfavorable condition. Since the latter outnumbered the former and the fine rised with the passing of the day, the great part of copyholders, accordingly, the great part of yeoman who held land by the copy, was, it seems, damaged.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great part of yeoman was ruin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economic side, copyholders must be distinguished by the scale of wealth they had. Copyholders who had more land than needed for their subsistence received a favor of rising prices by selling their surplus products, and they protected their own interests by a collective resistance to the landlord's endeavor to rise fines.

While copyholders who had only small land were ruined, wealthier copyholders could meet well to the agrarian changes. Indeed, by the agrarian changes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lower part of yeoman must submitted to fate of ruin. Taking this opportunity, the yeoman was rapidly differentiated into the upper and the lower parts. Consequently the yeoman decreased in number, but increased by far in wealth.

The yeoman who dealt with the agrarian changes successfully could have an opportunity of prosperity. The brisk land market was formed according as the agrarian changes went on and the economic value of land come to be regarded as more important. Furthermore, in the middle part of the sixteenth century, it was rapidly enlarged by the dissolution of the monasteries which brought about the largest transference of land-ownership since Domesday, the sale of crown lands, and the enclosure and reclamation of lands from forest, waste, and fen. Those lands were transferred *en bloc* at first, but in the later part of the sixteenth century, they were divided or sub-divided into small pieces and offered to the land markets. So the small land-purchasers could participate in the transaction of lands. As M. Campbell said, the transaction of small lands favored the yeoman. "A fortunate element for them in the situation lay in the fact that their hope for gain was not dependent on a large initial outlay of capital; nor did they have to execute their work on a large scale in order to produce a profit—a few extra bushels of grain to sell on the next market day, a few more sheep and cattle to drive to the fair, and the way prices were going a yeoman ride home with money in his pocket and plans in his head for the land he would buy when he could add more shillings and pounds to those already in his possession."

The yeoman, by purchasing lands in small scale and adding them to his holdings steadily, rised remarkably during the period ranging from the latter part of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nd a part of the yeoman rised into the gentleman. Robert Furse, a yeoman, of Dean Prior in Devonshire presents us a typical example of the rise of yeoman, and we can see such an example again elsewhere. John Bale, a yeoman, of Carton Curlieu in Leicestershire presents us the most spectacular example. The Bales, who had

purchased lands gradually and remained yet as a yeoman in 1570, had risen to the rank of gentry and to the baronetcy by 1643. But there was a great gulf, even among the yeoman themselves, between the wealthier and the poorer yeoman. Indeed, the yeoman who could rise into the gentry was the wealthiest among them, and the great part of yeoman could only improve their economic situations gradually, but the wealth of the yeoman increased substantially.

To sum up, the yeoman, the substantial rural middle class in the sixteenth-century England, was a class of wealthier peasants who had come into existence in the process of the breaking of manorial system. That is, the yeoman was wealthier peasants who had come into existence widely by increasing their holding “little by little” in the process of the breaking of manorial system, and, in that sense, the breaking of manorial system was a prerequisite to the coming into existence of the yeoman.

Generally speaking, the yeoman had prospered at least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nd of the fifteenth century and in the sixteenth century “affected vitally the fortunes of the yeoman. The continued rise in prices, the growth of markets, the increased tendency for rents to become fixed, and the growing demand for land all tended toward the increase of their numbers, and helped to shape the pattern of their lives.” Needless to say, many small peasants were ruined by the agrarian changes, and poorer yeoman whose titles of tenure were uncertain and who could not meet the change ruined and decreased in number. Nevertheless, we have to more emphasize the bright side than the dark side of the yeoman’s situation. That is, the yeoman who held the conditions for economic prosperity under the favorable term of tenure had increased their own lands by small enclosures, leases of demesne and land purchases, and prospered by rational farming.

The fifteenth century and the early sixteenth century was the period of coming into being of English yeoman, and the latter part of the sixteenth century was the period of yeoman’s prosperity.